2023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선발 계획 안내

1 연간 선발인원 : 5,000명 + 하반기 중 추가 확대

< 2023년 숙련기능인력(E-7-4) 유형별 선발계획표 >

			@수시	선발			
● 정기 선발	고득점	고용창출기업	부처 추천				
V 871 C2	(마감)	/일자리창출포상	제조업	뿌리 산업	농축업	어업	조선업
3,625명+α	200명	150명	650명	400명	400명	300명	400명

① 정기 선발: 1분기 625명, 2분기 3천 명, 3·4분기 추후공지(α)

- 1년에 총 4번,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.
- 절차 : 선발일정 공지(하이코리아) → 선발기간 내 신청 → 개별 심사 → 선발 결과 공지(하이코리아)

2 수시 선발: 2,500명

-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.
- 세부 유형
- 고득점 : 200명(<mark>마감</mark>)
-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: 150명
- 중앙부처 추천
- ▶일반 제조업 (고용노동부 추천) : 650명
- ▶뿌리산업 (산업통상자원부 추천) : 400명
- ▶ 농축업 (농림축산식품부 추천) : 400명
- ▶ 어업 (해양수산부 추천) : 300명
- ▶조선업 (산업통상자원부 추천) : 400명
- 절차 : 연중(1.1.~12.31.) 개별 신청 → 개별 심사 → 허가 여부 개별 통보

2 신청 일정

1. 정기 선발

○ 분기별 선발 결과는 하이코리아 - 공지사항 메뉴에 공지됩니다.

분기	선발 일정	선발인원	최종 발표
1분기	신청기간 : 2023.03.20.(월) ~ 03.24.(금) 1차 발표 : 2023.04.04.(화) 이의신청 : 2023.04.04.(화) ~ 04.11.(화)	625명	04.17.(월)
2분기	신청기간: 2023.06.12.(월) ~ 06.15.(목) 추가신청 기간: 2023.06.27.(화) ~ 07.05.(수) 1차 발표: 2023.07.17.(월) 이의신청: 2023.07.17.(월) ~ 07.21.(금)	3,000명	07.28.(금)
3분기	추후 공지	추후 공지	추후 공지
4분기	추후 공지	추후 공지	추후 공지

2. 수시 선발

- 연중('23.1.1. ~ '23.12.31.)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**선착순**으로 접수하며, <u>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</u> <u>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</u>됩니다.

3. 신청 방식

-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방문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 선발 기준

1. 정기 선발

-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,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 -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52점 이상

-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72점 이상

2. 수시 선발

- 고득점 쿼터
-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70점 이상
-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, 총 득점이 72점 이상
-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
-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고용창출우수기업
 - ▶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
 - ▶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(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 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)가 평균 5% 이상 증가한 업체 (별첨2 참조)
 - ▶ 1명 가능 (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)
 - 일자리 창출 지워 유공
 - ▶ 2년 이내 고용노동부 **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**으로 포상*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* 포상 : 훈장, 포장, 대통령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
 - ▶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,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
 - ▶ 1명 가능 (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)
 - ▶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

○ 부처 추천 쿼터

-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(제조업)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
- (뿌리산업)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 추천을 받은 자 ※ 뿌리산업 분야 수시선발은 산업통상자원부 별도 공고 참조

- (농축업)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
- (어업)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
- (조선업) 산업통상자워부 추천을 받은 자

4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기준

1. 정기 선발

신청 시기	1분기	2~4분기
제출 서류	▶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▶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*	▶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▶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

^{* 2022.03.10.} 이후 홈텍스(www.hometax.go.kr)에서 발급 가능

2. 수시 선발

신청 시기	2023.1.1. ~ 3.18.	2023.3.20. ~ 5.31.	2023.6.1. 이후
제출 서류	▶ 2020년 소득금액증명원	▶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	▶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
	▶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	▶ 2022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	▶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

5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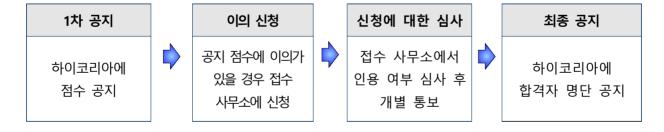
- 정기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,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.
 - ※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**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**로 제한합니다.
-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·철회 등이 제한되며,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고,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.
- 최종 선발 후,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,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 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.
-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합격자 명단은 민원 신청 접수 번호로 게재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청 후 접수증(체류허가 신청 확인서)을 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.

6 이의 신청 제도

- 제도 개요 : 민원 신청 시 계산한 점수와 선발 결과 명단에 공지된 점수가 불일치 시 일정 기간 내에 접수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
- 적용 범위 : 정기선발
- 신청인 : 신청 외국인 본인, 민원 접수 당시 대리했던 대리인
- **신청방법** : 민원 접수한 사무소에 방문 신청(전화, 팩스 신청 불가)

<이의 신청 절차도>



- 유의사항 : 민원 접수 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산정된 점수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에는 보완 서류 제출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
 - (예) 민원접수 시 미제출했던 어학 성적을 이의 신청 기간에 제출 불가

〈붙임 1〉 2023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

숙련기능인력(E-7-4) 점수제 평가 항목

□ 적용대상

- 체류자격: 비전문취업(E-9), 선원취업(E-10), 방문취업(H-2)

- 취업기간 : 최근 10년 간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을 것

- 제외 : 형사범, 세금체납자,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자 및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자

<참고> : 형사범은 벌금형(벌금액 50만원 이상)이상을 말하며,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

□ 점수요건 : 총 224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

1. 산업기여가치 '연간소득'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

2.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

가. 기본항목 : 최대 95점

1) 산업 기여 가치

◆ 연간소득 : 최대 20점

구 분	3,300만원 이상	3,000만원 이상	2,600만원 이상
배 점	20	15	10

<범례>: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,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(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)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,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

2) 미래 기여 가치

◆ 숙련도 : 최대 20점

그ㅂ		자격증 소지(A)				
구 분 	기사	산업기사	기능사	기량검증 통과®		
배 점	20	15	10	10		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- ④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, 국가기술자격법 시행 규칙 별표2의 "기술·기능분야"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(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)
- (B)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)

◆ 학력 : 최대 10점

구 분	학사	전문학사	고졸
배 점	1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: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

◆ 연령 : 최대 20점

구 분	~ 24세	~ 27세	~ 30세	~ 33세	~ 36세	~ 39세
배 점	20	17	14	11	8	5

<참고> : 만 나이로 계산 (출생일 산입하여 계산)

◆ 한국어능력 : 최대 25점

토픽(TOPIK)			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			
20	15	10	5			

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						
5급/5단계 이상	4급/4단계 이상	3급/3단계 이상	2급/2단계 이상			
25	20	15	10			

<참고> : 토픽은 공식점수표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,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(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)

나. 선택항목 : 최대 129점

◆ 근속기간 :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

<범례>: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.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,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

◆ 보유 자산 : 최대 35점

	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㈜					국내 자산®		
구 분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6천만원 이상	4천만원 이상	2천만원 이상	1억원 이상	8천만원 이상	5천만원 이상
배 점	15	12	9	7	5	20	15	10

<참고> : ㈜와 圖간 중복 산정 가능(단, 이 경우 圖는 ㈜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)

<범례> : ㈜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

®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(토지/주택/건물)만 해당

A와 B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

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: 최대 20점

구 분	뿌리산업 분야 및 <u>농.축산.어업.조선업.내항상선 분야 (A</u>)			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®		
-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	8년 이상	6년 이상	4년 이상
배 점	20	15	10	20	10	5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④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, 농축산어업, 조선업 및 내항상선

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

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: 최대 10점

구 분	국내 교	육경험(A)	국내 연수경험®		
T 世	학사이상 취득	전문학사 취득	1년 이상	6개월~1년 미만	
배 점	10	8	5	3	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(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)

<범례> : ㈜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지만 해당

®는 국내 사설기관연수(D-4-6)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

◆ 가점 : 최대 54점

	국내 -	유학경험	# (A)	관련	사회통합	읍, 면기	지역 근무경	경력 D
구 분	석사 이상	학사 이하	전문 학사	중앙부처 추천 ®	프로그램 이수 ©	4년이상	3년이상	2년이상
배 점	10	5	3	10	5	10	7	5
	사호	공헌	Ē	납세	시저	코로나19 관	<u> </u>	로 참여 ⑤
구 분	표창		사회 봉사	(300만원		1개월	2개월	3개월
배 점	5		3	[5		3	4
그ㅂ	인구	·감소지	역 근무경	경력⊕				
구 분	4년 이상	3년	이상	2년 이상				
배 점	5		3	2				

<참고> :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

<범례> : A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'학위소지' 및 '학력'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(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)

- ®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,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
- ◎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, 가-2-4.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
- ① 읍,면지역 기준 :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에 위치할 것 / 어선원,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
- (훈·포장/표창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(건당 2점, 최대 5점), (자원봉사)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(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

입증-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): 표창/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(1개만 적용)

- (F)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
- ⑤ 비전문취업(E-9)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.8.21.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,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(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)
- ①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(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)

다. 감점항목 : 최대 50점

구 부	출입	국관리법 위	반(A)	기타 국내 법령 위반®			
丁正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1회	2회 이상	3회 이상	
배 점	5 10		50	5	10	50	

<참고> : 항목 간 합산(A+B)점수를 적용함

<범례> : (A)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(처분면제, 과태료 포함)하며,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

®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

라. 업종.업체별 허용인원

- (공통)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(E-7-4)만 산정(다른 취업 비자(다른 E-7 직종 포함)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)하며,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
- (**일반 제조업**) 국민 고용인원의 2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
 - 단,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
- (건설업) 연평균 공사금액 x 0.1(1억당 0.1명 고용, 소수점 이하는 내림) 내에서 고용 가능
 - ※ (예)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: 100(억) x 0.1 = 10명 고용 가능
- (뿌리·농축어업) 국민 고용인원의 30%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. 단,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

<참고> 단, 현재 E-9 및 E-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

〈붙임 2〉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신청자 유의사항

- 근무처를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.
- 신청인의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<u><별첨 1>의 『점수제 전환 심사표』</u> (15쪽)를 작성하여 신청 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인 또는 근무처 등이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·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공증 받은 원본서류를 이미 법무부에 제출한 경우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며, 사본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※ 제출을 생략하는 경우 그 사유를 '점수제 전환 심사표(별첨1)' 심사내용에 기재하셔야 됩니다.
-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, 자격증,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 -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,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점수제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.
-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6개월 간 유효하며, 유효기간이 도과될 경우 인정 하고 있지 않습니다.

〈붙임 3〉 점수제 항목별 기준 및 제출서류

가. 기본항목

- 1) 산업기여 가치
 - ◆ 연간소득 :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(전년도 2년간)
 -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2년 연속 2,600만원을 넘어야 함
 - ※ 근로소득원천징수상의 소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
- 2) 미래기여 가치
 - ◆ 숙련도
 - A 자격증 : 해당 자격증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 - ※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, STCW 자격증(당직부원 10점, 유능부원 15점)
 - ® 기량검증 :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(통과) 증서
 - ※ 현재 기량검증은 **뿌리산업분야만** 가능, '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(☎ 02-2183-1635)'에서 기량 검증확인서 발급
 - ◆ 학력 : 학위증(전문학사이상) 또는 졸업장(고졸)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 - 전문학사 및 학사의 경우 학위증만 인정(기술학원 졸업증, 기술교육 이수증, 전문기술 자격증 등 불인정) 단, 필요시 교육기간 확인을 위해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 - ※ 정규과정(4년 이상 출석수업)이 아닌 국내 체류 중 원격대학, 온라인대학, 개방대학, 국제대학 등을 통해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심사를 통해 가점 불인정
 -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(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)하여야 함
 - ◆ 연령 : 민법 상 만 나이 계산 규정 적용 (여권상 생년월일)
 - ◆ 한국어능력
 - 토픽 : 공식점수표 (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)
 -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: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
 - ※ 4단계 이수 후 5단계 교육 진행 중 : 20점 / 사전평가 5단계 배정 후 현재 교육 중 : 0점

나. 선택항목

◆ 근속기간

-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연수별로 최대 10점을 부여(월 이하는 버림)
- 법무부에 근무처로 지정된 기간으로 산정
-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전 근무처의 근속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

◆ 보유 자산

- ④ 정기적금 :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 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
 - ※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- ® 부동산소유 :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)
- ◆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 분야 근무경력 :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 (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) 또는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
- A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(또는 농축어업)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
 - 뿌리산업분야인 경우에는 뿌리기업확인서 추가 제출
 - 뿌리기업의 경력기산 기준
 - ▶ 원칙 :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경력 기산
 - ▶ 뿌리기업 확인서(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장 발행) 상 별도의 영위 기간*이 표 시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경력을 기산할 수 있음
 - * 뿌리기업확인서 하단에 "2000.00.00부터 뿌리기업임을 입증합니다" 해당일부터 뿌리기업 경력 인정
 - ※ 뿌리기업 확인서 중간 사업개시일은 뿌리기업 경력 기산일 아님
 -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 (임의양식)를 작성하여 법무부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
 -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

- ◆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
 - ④ 국내 학위취득 : 학위증 사본 (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 - B 국내 사설연수 :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(교육과정, 교육기간 등 명시)
 -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연수(D-4-6)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(출석율 80% 이상)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

◆ 가점

- A 국내 유학경험 : 학위증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- ®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: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
 -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
 - 고용추천 중인 중앙부처(4개 부처) : 고용노동부, 산업통상자원부, 농림 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- © 사회통합프로그램(KIIP) : 공식 5단계 이수증(기본용 또는 심화용)
- ① 읍·면지역 근무경력: 해당 업체발급 경력(재직)증명서*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기준 :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, 면지역에 위치할 것(단, 어선원,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음)
 - 경력 산정 기준 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읍, 면 지역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(어선원,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 없이 승선 경력) 합산
 - * 소재지 명시,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

(E) 사회공헌

- 표창 : 표창장 원본(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)
- ※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
- 제외 : 국회의원, 지방의회, 글로벌센터장, 부시장, 다문화센터장 표창, 감사장, 공로패 등
- ▶ 표창은 국가기관(중앙부처의 장) 및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정식 표창을 의미
- ▶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,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

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음

- ▶ 사회봉사 :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(☎1365)발급 실적확인서, 단,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(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)
- (F) 납세실적 : 개인 소득금액증명서로 확인
- ⑤ 비전문취업(E-9)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.8.21.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아 참여한 경우,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(참여여부는 별도 제출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)
- ⑪ 해당 업체발급 경력(재직)증명서*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기준 : 근무처가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할 것
 - 경력 산정 기준 :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합산하며 총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
 - ※ 소재지 명시,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, 재직기간,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 분야 명시

다. 감점항목

B 필요시 범죄경력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〈별첨1〉점수제 전환 심사표 - 신청인 작성 서식

[참고서식]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(E-7-4) 항목별 심사표

(주의)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시실을 기재·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

성 명	등록번호	신청	정기()								
회사명	국 적	유형	수시 ()								
기본	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E-9,E-10,H-2 자격으로 국내 정상 추	키그 10년 시계 4년 시시 E OE 10H 9 키거스크 그에 지시 키스튁 키 ()									
요건	최근 10년 의대 4년 의정 E-5,E-10,H-2 자주으로 국내 28명 표	1 급인 가	()								
점수	① 산업기여가치 '연간소득' 10점 이상 총 득점 52점 이싱	- ()								
요건	② 미래기여가치 합계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 72점 이상	()								

구분				평가	심사내용(입증서류 등)
		ी स		점수	결사네 중(합중시표 중)
1	산약	법기여가기	이(연간소득)		
기		숙련도	자격증소지		
본	미래	거 신그	기량검증		
항	기여	ğ	학 력		
목	가치		면 령		
		한-	국어 능력		
		근속	기간		
선	보유	7	성기적금		
택	자산	7	국내자산		
항	근무	뿌리	의산업분야		
목	경력	일빈	제조업 등		
	교육,	Ţ	고육경험		
	연수	연수경험			
			내유학경험		
			-처 추천		
_	.11		<u> </u> 지역 근무		
가점			사회공헌 1 개 시 기		
			날세실적 남프로그램 이수		
			<u>- 로그램 이기</u> 남소지역 근무		
-	ין. דב		구관리법 위반		
í	남점		국내법 위반		

총점		

작성일: 2023. . . 작성자: (서명)

〈별첨2〉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(참고서식)

국민 고용창출 우수기업 심사표

회사명		사업자 등록번호	
작성자	(서명)	연락처	

가. 고용증가율 자료 심사 자료

A(1구간): 직전 1년간(12개월)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월별	-1월	-2월	-3월	-4월	-5월	-6월	-7월	-8월	-9월	-10월	-11월	-12월	평균
상시 고용 인원													

- 월별: 신청일 기준 직전 12개월
- ☞ '23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2개월이므로 '22년 9월 ~ 23년 8월 동안임
- 상시고용인원 :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국민 근로자 수
- ☞ 국민 고용을 의미하며, 외국인(외국인등록번호 소유자)은 제외
- ☞ 인원산정 결과 평균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(12.254 ⇒ 12.3명)

B(2구간) : 직전 1년전(전전년) 12개월간의 평균 국민 상시 근로자 수

월별	-1 3월	-14월	-1 5월	- l 6월	-17월	-1 8월	-19월	-20월	-21월	-22월	-23월	-24월	평균
상시													
고용													
인원													

- 월별: 신청일 기준 직전 1년前 12개월간(13개월 ~ 24개월전까지)
- ☞ '22년 9월 신청시에는 직전 13개월~24개월이므로 '20년 9월 ~ '21년 8월 동안임
- ☞ 평균 인원이 소수점인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계산(10.454 ⇒ 10.5명)

나. 심사 결과 (신청자는 이 부분을 작성하지 마세요)

구분	A (직전1년)	B (2년이내)	C 증가율(%) (A-B)/B × 100)	충족여부
상시 고용 인원	12.3	10.5	(12.3-10.5)/10.5 ×100 =17.142	17% 증가 하였으므로 충족

☞ C의 증가율은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함

본인은 상기 제출자료가 사실임을 확인하며, 향후 외국인근로자 기간연장시 자격변경 허가 때 제출한 고용증가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고용 인력에 대해 기간연장이 불허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.

작성일:

확인자(대표) :

서명

첨부 : 최근 2년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(월별로 제출)

〈별첨3〉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

□ 대상

- 고용노동부 '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*' 중 "<u>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"**</u> 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
 - * 포상 : 훈장, 포장, 대통령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(고용노동부)
 - ** 청년해외진출, 장년고용촉진, 공공구분 정규직 전환 유공은 대상 아님
 - 개인 유공자인 경우, 소속 기업 신청 가능
- □ 유효기가 : 포상일로부터 2년
- □ 제출서류
 - (기업) 상훈 입증 자료 (표창장 사본)
 - (개인 유공) 상훈 입증 자료(표창장 사본), 유공자 재직증명서
 - 개인 유공자가 소속 직원인 경우, 신청시까지 해당 기업 재직 여부 확인 위해 재직증명서 제출

※ **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** (고용노동부)

- (대상)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포상
- (종류) 훈장, 포상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(고용노동부)
- (심사기준) **일자리 창출지원**, 청년해외진출, 장년고용촉진, 공공구분 정 규직 전화
-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관련 일정 및 선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며, "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추진계획"참조

〈별첨4〉 신청 시 제출서류 (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)

- 1.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(필수)
- 2. 점수제 전환 심사표 (**필수**)
- 3. 고용사유서 (**필수**)
- 4. 표준근로계약서 (필수) : E-7-4 계약서 제출
- 5. 사업자 등록증 사본 (**필수**)
- 6. 납세증명서, 지방세납세증명서 (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, 필수)
- 7. 고용보험가입자 명부(4대 보험 가입자 명부) (필수)
 - ※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
- 8.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(신청인, 필수)
- 9. 신원보증서 : 고용주 작성 (**필수**)
- 10. 뿌리기업 확인서 (해당기업에 한함)
- 11. 재직증명서 및 (관련분야)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
- 12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(해당자에 한함)
- 13. 학위증 (해당자에 한함)
- 14.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(해당자에 한함)
- 15.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16. 정기적금 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17. 국내 자산 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18. 관계부처 (고용부, 농림부, 해수부, 산업부) 고용 추천서 (해당자에 한함)
- 19. 사회공헌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
- 20.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(해당자에 한함)
- 21.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(해당자에 한함)